

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

(앞쪽)

| | | |
|------|------|---------|
| 접수번호 | 접수일자 | 처리기간 5일 |
|------|------|---------|

| | | |
|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신고인 | 업종 | 등록번호 제 호 |
| | 상호(명칭) | |
| | 대표자 | 생년월일(외국인등록번호) |
| | 영업소 소재지 | (전화번호 :) |

| | | |
|------|--------|--|
| 변경사항 | 변경 구분 | |
| | 변경 연월일 | |
| | 변경 후 | |
| | 변경 전 | |

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 귀하

| | | |
|---------------|---|--------|
| 신고인 제출서류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상호(명칭)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: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: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,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: 소방시설업 등록수첩, 등록기준 중 변경된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. 국가기술자격증 나.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변경된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수수료 없음 |
|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상호(명칭), 영업소 소재지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: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, 사업자등록증명(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,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 등록증명을 말합니다)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(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: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| |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중 제1호의 사업자등록증명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(사업자등록증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합니다)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